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의 규제 적용 범위를 개선하고 정보보호관련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를 준용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용어 정의 조항을 개정 (안 제2조제8호)

나. 영상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단말장치 기술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조항 신설 (안 제29조제1항 단서)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보호 관련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동시 개정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단말장치의 기술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별첨)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6-xx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말장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5-13호, 2025. 12. 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xx월 xx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제2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으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20XX-XX호, 20XX.X.X>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의 제7호다목 2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대상기자재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					적합성평가 유형			기기 부호	기타 사항
		전자파 적합성	무선	유선	전자파 인체보호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자기 적합 확인		
					전자파 흡수율	전자파 강도					
다. 단말기기류	26)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영상 정보처리기기 (IP카메라, 폐쇄 회로TV, 네트워크 비디오녹 화기 등)	○		○				○		A90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유선분야 적합성 평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illegible]

현행	행	개 정 안
<신 설>		부 칙<제2026-XX호, 2026. XX. XX.>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 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중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제3조 관련)의 제7호다목 2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3조 관련)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